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제안

조시현¹⁾

우리 것과 같은 법정은 최후의 굶주린 사람이 먹여지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끝장낼 생활방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필요할 것이다 - 버트란드 러셀

일본제국정부와 군대가 아시아의 민중들, 특히 이른바 '위안소'에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된 여성들에게 저지른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조급치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이번 천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슬프고 또한 절망적이다. 일본정부는 예컨대 유엔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여사의 최근 보고서에서 권고된 것과 같이 자신이 지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²⁾ 또한 세계여성들이 전쟁중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비슷한 폭력의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의 유산이 아무런 정의도 없이 가해자의 사회와 피해자들의 사회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해치면서 다음 천년으로 넘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절박한 심정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관련된 나라들의 시민사회들은 피해자와 연대하여 국제법정을 세우는 중이다.³⁾ 이전과 이번 회의 중에 법정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주요 이유는 글쓴이가 이해하기로는 관련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국가가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 내에서의 법정절차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2000년 법정은 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⁴⁾ 이 글에서는 2000년 법정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조

1)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2) Gay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우리말 옮김에는 '맥두갈 보고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98년 10월호(통권 제24호), 63쪽; '맥두갈 보고서(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같은 잡지, 98년 11·12월호(통권 제25호), 83쪽 참조.

3) 1998년 국제심포지움 "How to Hold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Year 2000?" (Tokyo, 12 December 1998)에 발표된 여러 논문 참조.

4) 2000년 법정의 개최지에 관하여 많은 요인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잔혹행위에 대한 연합국의 재판은 범행자들은 범행장소로 돌려보내 그들이 유린한 사람들에게 의해 현지에서 재판되어야 한다는 다른 철학적 바탕 위에 서있다. 일본의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재판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이며 법정에 증언을 하기 위한 장거리 여행에 부적합할 지 모를 건강상태에 비추어 인도적인 측면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 2000년 법정이 열린다면 그것은 일본민간단체와 연대하여

금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한 논평과 제안을 하려고 한다.

1. 법정의 성격

2000년 법정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지도원칙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법정의 성격에 관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 법정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는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를 당한 여성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 대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두 개의 관련되지만 독자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2000년 법정의 성격자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 의해 세워진 법정이라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은 거기에서 다루어질 문제(관련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격), 그 구성과 적용 법규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책임이라는 첫 번째 문제를 비슷하게 다룬 이러한 법정으로 잘 알려진 예로는 버트란드 러셀 등의 주도로 설립된 것이 있다. 1967년 스톡홀름과 로스킬드(Roskilde)에서 두 차례의 회기로 열린 러셀법정은 베트남 전쟁 동안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과 여타 국가의 책임문제를 다루었다.⁵⁾ 일본정부가 이미 위안소 설치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고⁶⁾ 전쟁 중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주장이 전개됨에 비추어⁷⁾ 첫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법정의 유형에 대한 직접적인 선례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다른 법정과 비교하여 2000년 법정의 임무를 독특하고 훨씬 힘겨운 것으로 만든다. 1993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범죄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맥두걸 보고서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법정의 비정부적 성격은 이 법정이 배상판결과 형벌이라는 의미에서는 정의를 행할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점은 또한 국내 또는 국제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형사법정에서 적용되는 현행법과 절차를 단순히 따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부적 성격의 형사법정이 우리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법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판결을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만큼 무의미한 것이라고까지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전범법정'이라고

일본정부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바꾸고 일본사회를 인권의 보호와 촉진에 좀더 민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Prevent the Crime of Silence: Reports from the sessions of the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unded by Bertrand Russell, London, Stockholm, Roskilde* (selected and edited by Peter Limqueco and Peter Weiss with additional material selected and edited by Ken Coates and a Foreword by Noam Chomsky, 1971); 또한 <http://www.homeusers.prestel.co.uk/littleton>와 <http://www2.prestel.co.uk/littleton> 참조.

6) UN Doc. E/CN.4/1996/137, annex I.

7) 예컨대 Radhika Coomaraswam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UN Doc. E/CN.4/1996/53/Add.1(4 January 1996); Ustinia Dolgopol and Snehal Paranjape,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3) 참조.

부르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법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애초에 가지는 호기심을 국제공동체의 기본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저질러진 여성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바꿔놓아야만 한다. 이들이 비록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자신의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0년 법정은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내청중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의 가슴과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한다.

2000년 법정은 관련 범죄자행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의해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법정의 권한은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인간성에서 나온다.⁸⁾ 이 법정의 설립제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법정은 그 동안의 초점을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강간 수용소에서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체계적 성폭력으로 옮기면서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성격이 명백히 범죄적이라는 것을 청중들이 깨닫게 할 것이고 또한 더 나은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법정은 또한 이들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과거와 맞닥뜨리도록 도와주면서 정의와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용기있고 진솔한 노력의 모범을 세움으로써 이 법정은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2000년 법정이 형사책임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법정이 일상적인 말뜻에 따라 누구를 처벌하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 법정은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에 세워진 국제법정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재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법정은 오히려 양심의 법정이며 진실을 발견하고 범행자의 확인과 처벌하려는 긴 과정에 있어서 단지 첫 발자국에 불과하다. 2000년 법정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하여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이다.

더욱이 많은 국제법규는 국가들의 국제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정부법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작용할 것이다. 국제법의 적용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국제법이 국가사이에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의 양심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말대로 '인간성의 기초적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⁹⁾ 새로운 캠페인 방식으로 민간법정의 적절한 기능수행과 생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따라서 형성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넘치는 사고가 필요하다. 2000년 법정의 실제운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의 성공여부는 대체로 위에 설정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의 활동방식을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점들을 유의하면서 다음에서 관할권, 적용법규, 2000년 법정의 구성과 절차적 측면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한다.

2. 관할권

8) Jean-Paul Sartre, Inaugural Statement, 앞의 주 5 참조.

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p. 114.

2000년 법정에 제출될 주요문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일본 국가는 군위안부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가? (2) 군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범죄행위의 수행에 참여한 개인들은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가?¹⁰⁾ (3) 다른 국가들은 예를 들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이 이들의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할 의무를 지는가? 법정의 목적상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명백해질 것과 같이 별도로 아닌 하나의 절차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본안(本案)의 서술은 물론 더욱 다듬어질 수 있다. 관할권의 시간적 범위와 같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으나 이들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법정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법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법정이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위한 토론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국제법의 근본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자행된 극도로 야만적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작용한 - 민족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차별, 계급구조 따위와 같은 -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은 법정의 관할권내에 있게 될 것이다. 2000년 법정은 통상적인 법원의 심리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이러한 요인들의 확인과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같은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의 전체 목적이 단순히 현행 국제법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¹¹⁾ 이 문제가 가지는 사회, 문화, 법, 제도, 심리, 역사적 측면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여성의 관점이 또한 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들의 특성이 관련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완전히 고려되어야 한다.¹²⁾ 이러한 의미에서 진상조사와 연구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법적 분석은 앞으로의 피해자옹호활동에 유용할 것이다.

덧붙여 주목할 점은 2000년 법정은 역사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관련 범죄가 1930-40년대에 저질러졌을지라도 날로 숫자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으며 계속 구제 받지 못한 생존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점은 넓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히 무력충돌 중에 세계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영역을 포괄하도록 사실발견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다: 성노예를 위한 여성들(나이, 숫자, 출신, 사회적 지위 등)의 강제연행, 위안소의 설치, 관리, 운영과 위안소에서 군위안부의 취급과 조건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군부 그리고 관련 개인(예를 들어 경찰, 군인, 군속, 식민관헌, 점령지 군사정부와 토착부역자)의 역할과 관여의 정도. 각각의 여성피해자들이 겪거나 겪고있는 고통의 공통점들과 그 독특한 특징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그리고 그 가족,

10) 유고전범재판소는 “현행 국제법상 국가는 정의상 국내형사체제에 규정된 것과 같은 형사제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Prosecutor v. Blaskic* (Objection to the Issue of Subpoena Duces Tecum), IT-95-14-AR 108bis, Decision of 29 Oct. 1997, para. 25; 110 *International Law Reports* 698.

11) 특히 Ustinia Dolgopol, *A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1998년 국제심포지움, 앞의 주 3에 제출된 논문).

12) Kelly D. Askin, *Sexual Violence in Decisions and Indictments of the Yugoslav and Rwandan Tribunals: Current Statu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1999), p. 97 참조.

친척, 친구들)에게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전후 생존조건과 건강상태, 사회의 응대, 재활과 재통합과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의 특징과 개인책임자

누구를 2000년 법정에 세울 것인지 선정하는 것은 전체 재판절차의 성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법정은 잔혹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다.¹³⁾ 이 문제는 진상조사팀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구 일본황제, 히로히토는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지만 문제되는 시기 동안 여성에 대한 그의 범죄책임은 일본국가와 법정에 기소될 사람들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면서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재판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언급된 사람의 명단은 법정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둘째, 범죄 자행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범죄피의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흩어짐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 당시 국가기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생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듯하다. 이러한 고위 관원들은 명령책임의 법리에 의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상대적으로 충족시키기 쉽다. 이를 위해 명령의 구조와 결정과정이 강조될 것이다.

셋째, 국제범죄의 각 유형의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와 군부의 관여의 정도는 일본정부에게 국가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한편 예컨대 자발적이건 강제이건 모집의 방식은 위안소에서 저질러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형사책임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범죄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은 이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와 집단학살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다.¹⁴⁾ 2000년 법정은 문제가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특히 군부가 위안소의 안팎에서 자행된 집단강간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전후(戰後)책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자세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기는커녕 진실의 부정, 은닉, 은폐, 왜곡을 일삼아 왔고 전쟁 동안과 그후에도 문서와 자료를 파괴하고 숨기는 것은 물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있다. 광범위한 학살이 있었으며 외국 또한 종종 적지에 아무런 생존수단도 남기지 않은 채 군위안부를 유기했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측면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백하게 일본정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손해배상과 사죄를 포함한 배상을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¹⁵⁾ 의심할 것도 없이 진실의 은폐는 모든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2000년 법정은 또한 앞의 문제 (3)을 다룰 수 있다. 연합국들은 전쟁직후 군성노예에 관한 광범위한 문서와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스스로 이 여성

13) 임무의 차원을 예시하기 위해 동경재판이 증거로 제출된 4436건의 문서와 49명의 증언을 검토하는데 2년이 넘게 소요됐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Utsumi Aiko, Tokyo Tribunal and Sexual Violence (1998년 국제심포지움, 앞의 주 3, 제출 논문).

14) 관련되는 국제범죄의 유형은 특히 맥두걸보고서, 앞의 주 2, 참조.

15) *Velasquez Rodriguez Case*, Judgment of July 29, 1988,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 C, No. 4 (1988), 95 *ILR* 259.

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용인하여 그러한 잔혹행위의 자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았다면 연합국들은 최소한 “(왜 이들이 범죄자들을 재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¹⁶⁾ 더욱이 연합국들과 (피해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예를 들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할 추가적인 의무를 지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3. 법정의 구성

2000년 법정의 구성과 참가자들의 적절한 역할 배분이라는 문제는 법정의 목표, 성격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겉보기에 기술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의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판사의 수는 법정이 다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판사의 자격은 법정의 목적이 단지 배상과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비추어 법률가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법률가의 참가는 법정의 적절한 절차진행을 위해 요구된다.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국제사회의 양심을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충분할 것이다. 판사들이 가해국과 피해국이 아닌 국가출신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¹⁷⁾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덧붙여 판사들의 기능의 하나는 바로 판결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짧을 것임에 비추어 판결이 자세하거나 길 필요는 없다. 세계시민사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사실의 확인과 법규적용이 담긴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판결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반드시 법적인 판결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범죄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검사를 둘 것인지 이다. 재판 전에 범죄수사를 수행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할 국제검찰단을 두어 비정부법정에서의 최종적인 재판을 위해 중요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체제는 본래 형사정의의 배분을 독점하고자하는 현대 국가구조에서 오는 국가권력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판절차는 ‘시민소송’(civil action), 즉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를 둘 경우 피해자들이 전체 과정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증인의 지위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법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검찰을 두기로 결정한다면 피해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가령 적어도 각 국가에 한 명의 검사를 두는 방식으로 더욱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 한다. 2000년 법정의 진정한 정당성은 오늘날까지 고통을 안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른 점에 있어서도 판사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음 항에서 논의될 것이다.

배심원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배심원들은 법정이 전

16) Dolgopol and Paranjape, 앞의 주 7, 203쪽.

17) VAWW-NET Japan Research and Investigation Team, Aim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Committee Proposal from Japan (paper presented to the 1998 International Symposium: How to Hold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Year 2000?, Tokyo, Japan, 12 December 1998).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표가 되는 청중을 상징한다는 착상이다. 심리과정은 공개될 수 있고 각각의 배심원이 각자의 평결을 쓰도록 권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판될 수 있다. 2000년 법정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결의(안)을 기초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피고측 변호인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원칙적으로 재판절차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이 법정에 특별한 장치를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가자들의 불편부당함을 증명하고 공정한 재판인 것처럼 보일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2000년 법정은 결국 캠페인 하는 한 방법일 따름인 것이다. 일본정부와 피고인들이 변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은 국내 또는 국제법원에서 정의를 위한 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은 공판의 운영과 기록을 담당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법정 준비단계에서 사무국은 정보공유와 섭외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국제법정과는 다르다. 1999년 2월 출범한 여성법정국제조직위원회(Women's Tribunal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4. 법정의 절차

이러한 재판절차와 다른 측면을 규율하기 위해 헌장(charter)을 채택하자는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이는 명백하게 뉘른베르크와 동경재판을 유추한 것이고 또한 보다 최근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관한 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법원의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법정에서 타당한 고려사항이 비정부법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법정이 이러한 규정에서 예시되는 것과 같은 상세한 절차를 필요로 함에 반하여 탄력성은 미리 정한 엄격한 틀을 가지지 않는 비정부법정의 요체일 것이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은 2000년 법정의 목적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좌절시킬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은 불필요한 복잡함과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 법정조직위원들과 판사들의 의견일치로 해결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책임을 심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제소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정은 이를 개정전 적절한 시기에 일본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 제소에 대한 피고정부의 답변은 현시점에서 기대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국제인권협약상의 여러 인권기구의 권한을 수락하지 않은 사실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검사 또는 설치된다면 검찰부(the Prosecution Office)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소장은 앞으로 열릴 법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기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규가 자세히 기록된다. 조사팀과 법률팀은 이를 위해 충분히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들이 법정이 개정되기 상당기간 전에 이러한 기소장에 담을 범죄혐의사실을 구체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도 역시 다른 맥락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규칙은 이 법정에서 유지되기 어렵다.¹⁸⁾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수단과 관련하여 2000년 법정은 법정에 나오도록 요청서, 소환요구서 또는 소환영장(subpoena)을 발부할 것인지 고려할

18) *Prosecutor v. Rajic* (Review of Indictment), Case IT-95-12-I, Decision of 29 August 1995; 108 *ILR* 10 참조.

수 있다. 증거자료의 대부분이 국가의 손아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정은 당국자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subpoena duces tecum). 법정의 준비단계에서 이들이 전시문서와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정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¹⁹⁾ 2000년 법정은 협력이라는 바탕에서 운영될 따름이다.

형사절차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2000년 법정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이다. 여러 국제형사재판소의 확립된 관행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비추어²⁰⁾ 이와 다르게 진행하는 것은 2000년 법정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 법정의 초점은 역시 군위안부들을 성노예로 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과 역할을 밝혀내는 노력을 촉발시키는 데에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 출두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차진행은 말할 것도 없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²¹⁾

2000년 법정의 진행은 (검사에 의한) 기소장의 낭독, 증인진술의 청취, 증거와 조사 결과의 제출의 순서로 할 수 있다. 각 참가자의 역할 배분은 핵심적이다. 각 참가국에서 온 한들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시간제한 안에 증언을 할 수 있다. 퇴역군인들의 증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서면자료는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한 혹시 모를 위해행위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판결의 부여와 형벌의 부과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유용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재판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2000년 법정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유죄인지를 판단하면 충분한 것 같다. 비정부법정에서의 재판은 권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전반적인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법정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항소절차와 관련된다. 법정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은 법정의 목적상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정부와 피고인들이 판결에 항소하거나 비판할 필요를 느낀다면 이들은 절차의 흠결이나 법정이 실제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음을 헛뜯기보다는 법정에 출두하여 그들이 아는 바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러기 위한 적절한 길은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2000년 법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들은 명백하게 그 성격상 다른 법원에서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세워놓은 규칙에 따라 지엽적인 절차적 치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상식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맺는 말

2000년 법정의 주요목표의 하나는 군위안부에게 저질러진 잔혹행위가 국제법상 범죄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범행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일본과 다른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도 이러한 범죄의

19) *Prosecutor v. Blaskic* (Objection to the Issue of Subpoena Duces Tecum), IT-95-14-PT, Decision of 18 July 1997; IT-95-14-AR 108bis, Decision of 12 August; 110 *ILR* 608 참조.

20) 예컨대 국제형사법원 규정, 제63조. UN Doc. A/CONF.183/9 (17 July 1998).

21) 국제형사법원 규정, 제65조 참조.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는 행동을 취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000년 법정의 설립과 진행은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짜여져야 한다. 피해자의 법정이라는 이 법정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2000년 법정은 각국정부들이 듣기를 꺼려하는 여성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광장이 될 것이다. 이 법정의 개최는 진정한 법원이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신비로운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맥두걸여사가 최종보고서에서 요청한대로 유엔은 무엇보다 “(a)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강간수용소를 설립, 지원 또는 이용한 군인과 군속 개개인에 대한 증거 수집, (b) 피해자 면담; (c) 일본검찰에게 재판준비자료의 전달, (d) 당해 국가 안에 있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 소추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생존자단체들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²⁾ 이러한 일에 있어서 유엔과 특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준비와 개최에 모든 지지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유엔의 관여는 특히 환영할 만한 것이며 법정의 성공적 개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2000년 법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법정에서 개인형사책임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도전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2) 앞의 주 3, Annex, para. 63.